

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계획

□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

【 '23.10.4.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】

◇ 납품대금 연동제란?

-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, 판매,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(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)

◇ 적용대상

- ① (위탁기업) 대기업, 중견기업, 중기업, 공기업 등
- ② (수탁기업) 중소기업, 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)

◇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시기

- 2023년 10월 4일부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·용역 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·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□ 설명회 개요

- (설 명 회)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
- (일 시) 2023. 6. 13.(화), 14:00~15:30
- (장 소) 대전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(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)
- (참석대상)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및 관심 기업
- (주요내용) ①납품대금 연동제 설명, ②법제화에 따른 기업 준비사항 소개, ③동행기업 모집 홍보

< '23년 사업설명회 일정(안) >

시 간(소요시간)	주요내용	비 고
14:00~14:30 ('30)	·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, 동행기업 모집 홍보 등	중소벤처기업청
14:30~15:30 ('60)	· 질의응답 및 폐회	중소벤처기업청

□ 문의처

-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서비스팀 042-480-3043